

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청구 관련 업무처리 지침(2022. 10.)에 따라 사업장에서 자진납부 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,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고, 사업주와 전화통화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. 10. 22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



1. 건 명: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
2. 근 거: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청구 관련 업무처리 지침(2022. 10.)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, 같은 법 제21조 및 제27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 붙임(공시송달자 명단)
4. 공고기간: 2024. 10. 22. ~ 2024. 11. 5.(15일간)
5. 문의사항: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안혜란(031-828-0975)

[붙임]

공시송달자명단

(공고기간 : 2024. 10. 22. ~ 2024. 11. 5.)

연 번	사업장 명	사업장 관리 번호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 불능 사유	주소
				회수금액	회수사유		
1	주식회사 온○○○	623-81-○ ○○○○	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○ 부정이익등 (부정이익 가액+이자) : 1,842,000원 *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가 발생한 달('24.3월)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수로 하며, 부정 청구 최종 처분일에 따라 이자는 달라질 수 있음 ** 부정이익 가액에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 2항에 따른 이자율(1천분의35)을 곱하여 산정함(2024. 3. 22. 시행) ○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, 부정청구등으로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 *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제10조,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(2024. 9. 27. 시행) ** 동법 제2조제6호 가목(허위청구)에 해당할 경우,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500%임.	최소고용유지기간 중 고용조건 변동 (정규직→프리랜서)	주소 불명	경기도 의정부시 이하생략